

「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일반유형 등에 대한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대상지역 확대, 주택 면적제한 완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,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

< 주요내용 >

- 가. 전세임대 초기입주자들의 최대 임대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
(안 제12조)
- 나. 타 유형보다 짧은 청년·신혼부부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을 추가 4년 연장하고자 함(안 제12조의2, 제13조의3, 제13조의3)
- 다. 전세임대 신청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(안 제10조의3, 제10조의4)

라. 1~2인가구 전세임대 공급면적 제한 완화(안 제10조,제10조의2)

마. 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한도 완화(안 제10조) 및 재계약시 소득·자산요건 심사 간소화(안 제7조) 등 전세임대 운영·관리규정 미비사항 보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주거복지지원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
- 팩스 : 044-201-566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(전화 044-201-4479, 453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